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4호서식]

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서

1. 지정번호: 제 호

2. 기 관 명:

3. 주 소:

4. 인증업무의 범위:

「소방장비관리법」 제14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방장비 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소 방 청 장 직인

210㎜×297㎜[(백상지(150g/㎡)]